

충청북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6년 11월 11일

나. 회부일자 : 1996년 11월 12일

3. 제안이유

- 공중위생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이·미용사 면허 및 체육시설업
등 관련 수수료 항목을 현실에 맞게 신설하고
- 공연법과 음란 및 비디오물에 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로
부터 시장·군수의 소관업무로 이관되어 시·군조례로 정하여야할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수수료 항목신설 : 11개항목

-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신규 5,000원, 재교부 3,000원)

- 체육시설업 관련항목(최고 200,000원~최저 10,000원)

. 골프장, 스키장업, 기타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 및
등록사항

. 체육시설업 신고사항 등

- 수수료 삭제항목 : 6개항목(시·군 조례로 규정)
 - 공연장 설치허가, 변경허가, 허가증재교부
 -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대여업자등록, 변경등록, 등록증 재교부

5. 검토의견

충청북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미용사 면허 및 체육시설법관련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며 공연장허가권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 대여업자 등록관련 업무가 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의 소관업무로 이관되어 수수료 징수항목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 주용 내용으로는

-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중 제2호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시설 확인등) "마" 목의 제목을 "보건사회관계" 를 "보건사회위생관계" 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미용사면허증교부 신규 5,000원, 재교부3,000원" 의 수수료 요율을 정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 문화공보관련 수수료 요율중 소관업무가 시군으로 이관된 공연장 설치 허가, 변경허가, 허가증재교부와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대여업자등록 신청, 등록사항변경신고, 등록증재교부신청의 내용을 삭제하였고
- 또한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에 "체육시설업관계" 를 "사" 목으로 신설하고 건당 수수료를 "골프장 스키장업 사업계획 승인신청 200,000원, 골프장 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60,000원, 골프장 스키장업 등록신청 100,000원, 골프장 스키장업 변경등록신청 40,000원,

기타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신청 100,000원, 기타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40,000원, 기타 등록체육시설업 등록신청 60,000원, 기타 등록체육시설업 변경등록신청 20,000원,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 신고 10,000원 " 으로 9개항목을 신설 조정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법령에 부합되게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승인하여 준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첨 부

- 충청북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